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요

- 용역명: 『녹색인프라수출지원펀드』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예산: 금 5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펀드 구조 및 투자가이드라인 제안, 펀드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도출 등

□ 긴급입찰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4.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 2024. 1. 1.)
-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분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녹색인프라 수출지원펀드 조성 관련 '24년 정부 출자 예산 확정으로 빠른 시일 내 펀드 조성 추진이 요구되는 바 본 용역 입찰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